

일본 수입식품 신고제도 및 검사 체계

가 수입식품 신고제도

1) 사전신고제도

- 내용 : 수입화물이 항구에 도착하기 7일전부터 신고하는 제도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필증명서 발급
- 특징 : 검사가 필요 없는 물건은 도착 후 바로 유통가능 하므로 시간 절약되나, 검사가 요구되는 물건은 사전신고의 이점이 없음.
(cf. 한국의 경우 도착 5일전부터 신고)

2) 계획수입제도

- 내용 : 특정 식품을 주기적으로 반복수입 할 경우, 첫회 수입시 검역소에 연간 수입계획서 제출하고, 심사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증이 발급되며, 일정기간동안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제도
 - 1년간 : 밀, 대두 등 곡물류, 유채씨, 참깨 등(신선채소류는 제외)
 - 3년간 : 식품제조용 기계, 기구 또는 용기포장
- 계획수입 취소 :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있다 판단될 경우
- 특징 : 연간 계획에 따라 정확한 날짜에 수입하는 경우, 첫 수입물건 이후 서류와 검사 생략하는 장점 있음.
 - 사업자가 연말에 수입실적을 일괄 제출하여 세관의 수입정보와 검역소 통관정보를 확인 점검함.

3) 수출국 공공검사기관 제도

- 내용 :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에서 사전 검사를 받아 그 성적서가 첨부된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해 검역소의 잔류농약 검사를 생략하는 제도(미생물검사는 생략 제외)

- 운송도중 세균, 곰팡이 등 발생 우려 품목은 제외
- 명령검사 해당 품목은 제외

○ 수출국 공공검사기관 등록 : 57개국 3,893기관('12.1.26 기준)

- 채소류 ID품목(오이, 방울토마토, 파프리카, 고추, 깻잎) id는 별도 제도가 있으므로 적용제외. 5품목외는 잔류농약성적서를 한-일간 인정

4) 동일식품 계속수입제도

○ 특정식품등을 반복 수입할 경우, 처음 수입때 신고서에 검사성적서가 첨부되고, 심사결과 문제없으면 일정기간 해당 검사성적서를 인정하여 다음 수입시 해당항목의 지도 검사 생략가능, 다만, 이력관리를 통해 수입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검사할 수 있음. (통관 모니터에 이력자료가 공지되는 경우와, 검사원의 판단으로)

- 동일 제조소에서 동일제품을 동일방법으로 제조
- 원재료, 첨가물 등 성분 및 사용량 동일

○ 유효기간 : 1년이나 기계·기구·용기포장은 3년, 와인은 3년 이상도 가능

- 검사명령 품목은 생략 불가능 (1차농산물은 해당 안됨.)
- 아프라톡신(곰팡이독), 세균 검사결과는 해당없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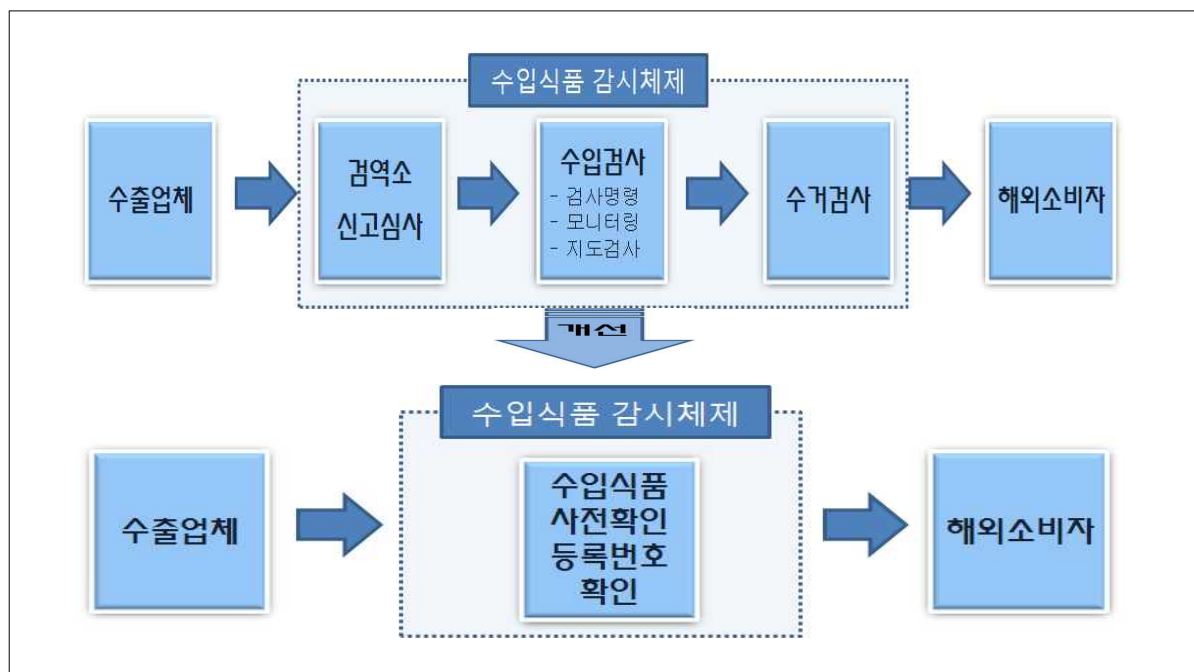
5) 사전확인제도

○ 대상품목 : 농산물 비가공제품(신선)은 해당사항 없으며, 가공식품 또는 기구류

○ 수입된 식품등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하다는 것을 사전 확인하고 당해 식품 및 그 제조 가공업자를 등록하여 등록된 식품들에 대해 수입시 검사가 일정기간 생략(검사명령 관련 및 모니터링 검사 품목 제외) 됨과 동시에 신고후 신속히 신고완료증명이 교부됨.

- 제조자가 수출국 정부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후생성에 제출
- 유효기간 “ 등록일로부터 3년

-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 : 약 6개월 정도
- 한국업체가 한국정부에 신청하면, 검토하여 일본정부에 요청, 일본 정부가 등록 수락
- 수출국 현지 실사 : 직접 실사 확인 또는 상대국 정부에 관리 위임 하기도 함.
 - 현지실사에 따른 비용 관련한 공식적인 비용청구는 없으며, 실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례상 한국정부측에서 부담
- 현재 김치가공공장 : 2업체 등록완료 ('11.5.24)
 - 대상FNF(배추김치 등 21개 품목), 모아(김치,나물류 등 20개 품목)
- 등록효과 : 수출업체 행정업무 간소화, 식품검사비용 절감, 위생 · 안전성 신뢰 구축
 - 연 1회 검사 → 3년 1회, 검사비 절감 (2천만원/연간)



6) 품목등록제도

- 계속적으로 수입하는 식품(법으로 적합한 취지가 확인된 것)을 등록 하여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및 FAINS(수입식품전산망) 등에 의한 입력 사항이 등록번호에 의해 조회될 수 있는 제도

○ 대상/유효기간 : 가공품/1년간 (기구, 용기포장, 장난감은 무제한)

○ 등록항목

- 제조 또는 가공방법, 원재료, 첨가물 등
- 재질 (기구, 용기포장, 장난감)
- 선행 샘플 등에 의한 검사결과

○ 등록절차 : 한국제조업자→ 등록검사기관에 검사→수입자 →검역소에서류제출

- 품목등록이 되면 번호가 발급되며, 신고서에 해당번호 기입하면 되므로 검사결과가 한꺼번에 등록되어 하여 절차가 매우 간소화됨.
- 동일식품 계속수입제도와 수입식품 품목등록제도를 함께 이용하는 업체가 많음.
- 선행샘플제도 : 샘플을 등록검사기관에서 검사후 결과 제출시 검사생략

※ 일본산 농산물 수출 반송품에 대한 검사

○ 일본 국내 기준에는 적합하나, 수출국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수출 반송된 식품의 처리방법 : 일본으로의 재수입에 해당되므로 검사 진행

- 식중독균으로 반송된 수출품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도 폐기 방침
- 하지만 업체에서 민간등록기관에 자주검사를 진행하여 안전성 증명하면 이론상 통관이 가능함.

나 수입식품 검사종류

□ 서류검사 : 수입신고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통관 결정

□ 모니터링검사 : 검역소에서 직접 정밀검사를 수행하여 통관여부 결정

○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모니터링 검사는 매년 3월말 의약식품안전국 식품안전부에서 계획수립하여 각 검역소로 시달함. (기준일 :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까지)

- 품목, 그룹, 조건, 검체 채취방법, 분석방법, 법령기준 등을 도식화하고, 전년도 data를 참고하여 검사회수를 정하여 검역소별 의무량 할당
- 검사항목 : 잔류농약, 곰팡이, 방사선, GMO 등이며 문제발생시 전량회수
- 검사비용은 일본 정부가 부담

○ 검사비용은 평균 10%정도이며, 2회 위반시 30%로 강화

□ 명령검사 : 민간 공인검사기관의 정밀검사를 수행하여 통관여부 결정

○ 위반경험이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의약식품안전국 식품안전부와 감시안전과 수입식품안전대책실에서 매년 명령검사 대상을 설정하여 각 검역소에 시달함.(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까지)

- 명령검사 대상은 수출국가, 대상식품, 검사항목 등이 지정되어 있음. (리스테리아처럼 치명적인 병균은 단계없이 바로 명령검사 시행)
- 명령검사는 등록된 민간공인검사기관에서 진행하며, 비용은 수출자 부담임. (파프리카 잔류농약 1항목당 15천엔~20천엔)
- 검사기관은 수입식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창고에 가서 시료 채취하여 검사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결과를 검역소에 제출하면 문제가 없는 경우 통관, 부적합일 경우는 반송 또는 폐기됨.

○ 명령검사 해제 기준

- 국가간 협의(요청) : 100%명령검사 → 10% 모니터링검사로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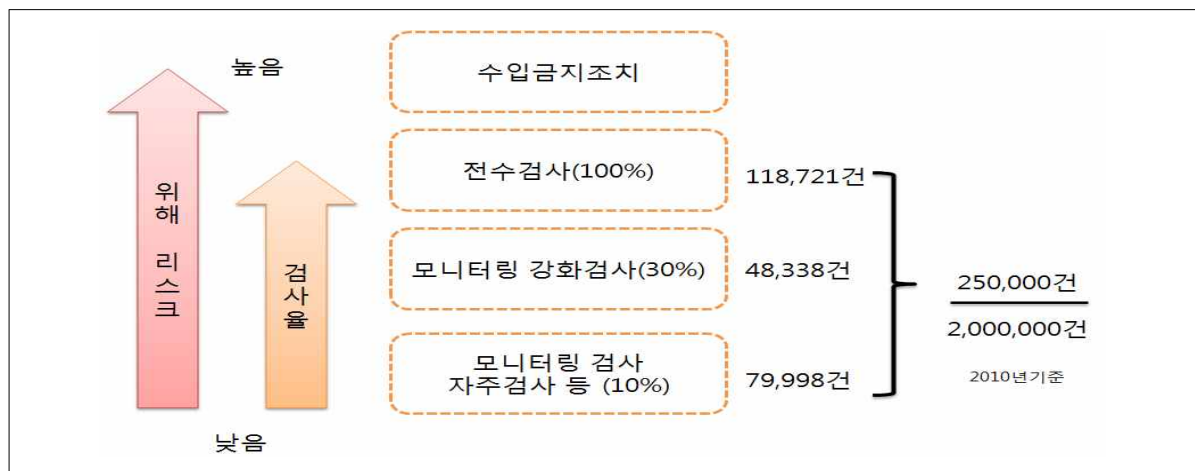
- 2년간 위반실적이 없는 경우 : 100% → 30% 모니터링강화검사
- 1년간 300건이상 분석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: 100% → 30%

※ 자주검사 : 규격기준, 적정첨가물 확인 등 후생성에서 제시하는 주요 항목을 수입업자가 민간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는 것.

※ 포괄적 수입금지 제도(Comprehensive Import Ban) :

특정국가의 특정품목 부적합율이 5%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제도

<일본의 수입식품검사종류>



□ 위반 판명시 대응

- 위반시 폐기, 반송 또는 식용외 용도로 전용할 것을 수입자에 지시
 - 일본내 유통할 경우, 관계 도도부현 등과 연대, 회수 등 조치 강구
- 도도부현 감시에 의해 위반 수입식품 발견시 수입검사 강화
- 위반한 수입자에 대한 조치사항
 - 위반원인 조사 및 보고
 - 동일제품을 재차 수입할 경우, 샘플 등 검사를 통한 개선 여부 확인
 - 위반 반복 수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
 - 위반사례의 공포(홈페이지)